

# 광역 VTS 도입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이윤철\*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요약** : 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IMO차원의 국제협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이행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가간 협력체제를 통한 광역 VTS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발생을 방지하고(사전 예방), 사고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체계(사후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검토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Key words** : VTS, 해상교통관제, 광역 VTS, 유엔해양법협약, SOLAS 협약



## I. 서 설

- ◆ 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IMO차원의 국제협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이행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 주변국가간 협력체제를 통한 광역 VTS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발생을 방지하고(사전 예방), 사고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체계(사후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I. VTS 운영에 관한 국제법 규정

### 1.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 개요

VTS에 적용될 수 있는 연안국의 권한은 자국의 내수와 영해 내의 모든 선박에 대해 강제할 수 있으며, 선박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는 VTS를 실행하고 시행할 수 있음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영해 의혹에서는 VTS관련 연안국의 권한은 해양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됨.

(2)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 ① 영해내의 항로대와 통항관리방식 설정 : 제22조(공해상에서는 IMO가 TSS 지정 관할권, COLREG 10조)
- ② 무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제정 : 제21조
- ③ 연안국의 의무 : 제24조, 제26조
- ④ 국제해협의 항로대와 통항관리방식 설정 : 제42조 제2항
- ⑤ 해협이공통과 해협연안국의 의무 : 제43조

## II. VTS 운영에 관한 국제법 규정(2)

### 2. IMO 국제해사협약

(1) 개요

- ◆ IMO가 시행하고 있는 협약들은 대부분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과 사고발생시 보상 등 사후구제적인 협약으로 대별됨.
- ◆ 해양사고의 방지 측면 : 항해의 안전, 선박기인 해양오염방지, 해사안전 및 해상보안을 위한 국제적 규정과 기준의 채택 및 실행에 초점.
- ◆ 사후 구제 및 보상 측면 : IMO는 해양사고 희생자에게 신속하고 적당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것에 초점
- ◆ 해상교통관제의 정실 및 시행과 해상교통관제요원의 훈련 및 증원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협약임.

\* 대표저자 : 이윤철 lyc@hhu.ac.kr

## II. VTS 운영에 관한 국제법 규정(3)

### (3) SOLAS 협약 및 관련 지침

#### ① 해상교통관제

◦ SOLAS 협약 제5장 제12규칙(해상교통관제)에 VTS는 해상교통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연안국은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

#### ② 해상교통관제지침

◦ 제20차 총회 결의서 857호 "해상교통관제지침" (Resolution A.857(20)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에는 VTS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책임과 의무, 통신과 보고, 조작, 참여선박의 책임과 의무, VTS 시행계획 지원과 VTS 운영요원의 자격 및 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III. VTS 적용범위의 확대 및 관련 국제법 규정검토

### 3.1 VTS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 영해 이내  
 ◦ 관련규정 : 협약 제22-24조, 제42-43조, SOLAS협약 제12조 제3항

### 3.2 접속수역과 VIS

#### (1) 접속수역의 개념

◦ 개념 : 연안국이 설정한 영해 범위 밖의 일정한 수역(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으로서, 자국의 영토 또는 영해 내에서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보건위생에 관한 법규 위반을 예방하거나 처벌할 것을 목적으로 함(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 해석원칙 : 자국의 영토나 영해 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접속수역 내에서 규제할 수 있을 뿐이고, 접속수역 내에서 연안국의 국내법을 어긴 경우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

## III. VTS 적용범위의 확대 및 관련 국제법 규정검토(2)

### (2) 접속수역에 대한 VTS 관제

◦ 접속수역에서는 안보, 안전, 환경보호 등에 관한 연안국의 입법적 관할권을 모호시키는 관행이 널리 수행되고 있음(관세법).  
 ◦ 그러나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또한 VTS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및 IMO SOLAS 협약과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협약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3.3 배타적 경제수역과 VTS

#### (1) 개념

◦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까지의 수역으로 연안국에게 해양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경제적 이용권을 부여함

#### (2) 법적 지위

◦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영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음(협약 제55조)

## III. VTS 적용범위의 확대 및 관련 국제법 규정검토(3)

### 3.3 배타적 경제수역과 VTS

#### (3) 연안국 및 타국의 권리와 의무

◦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 주권적 권리에선 생물자원의 개발·보존·관리권, 비생물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권, 수역의 공적과 이용권이 있으며, 관할권에선 인공섬 또는 시설·구조물의 설치·식물권, 해양과학조사권, 해양환경의 보호·보존권(해양오염방지권)이 있고, 기타의 권리로서는 EEZ 제도를 집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권리가 있음.  
 ◦ 연안국의 의무 :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 타국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상충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서는 안되고 규정(협약 제56조 제2항).  
 ◦ 타국의 권리와 의무 : 모든 국가는 공해제도와 인정하는 환경권, 상공비행권, 예저선 및 관선부설권을 가지며(협약 제43조 제1항),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 연안국의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  
 ◦ EEZ 제도의 본래 취지와 무관되지 않는 한 연안국이 제정하여 시행중인 국내법령을 그 수위를 이용하는 타국에 의해 준수되어야 함(협약 제56조 제3항)

## III. VTS 적용범위의 확대 및 관련 국제법 규정검토(4)

### (4) 배타적 경제수역과 VTS

◦ VTS의 적용범위로 관할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인정하고,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권을 위한 해양과학조사권, 해양자원의 개발·보존·관리권, 수역의 공적과 이용권이 있으며, 관할권에선 인공섬 또는 시설·구조물의 설치·식물권, 해양과학조사권, 해양환경의 보호·보존권(해양오염방지권)이 있고, 기타의 권리로서는 EEZ 제도를 집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권리가 있음.  
 ◦ VTS는 선박교통통제가 목적이지만, 영해 기선의 수역에까지 자국선박을 관할권 안에 포함시켜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연안국의 입법권).

## III. VTS 적용범위의 확대 및 관련 국제법 규정검토(5)

### 3.4 공해와 VTS

#### (1) 개념

◦ 국가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는 해양의 부분으로서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를 제외한 해면과 접속수역

#### (2) 공해의 자유와 제한

◦ 공해의 자유 : 공해의 자유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선박항행의 자유이며 그 밖에 상공비행의 자유, 예저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 인공섬 및 기타 시설물의 자유, 어업의 자유, 해양과학조사의 자유가 있음  
 ◦ 제한 : 모든 국가는 공해오염을 방지함에 있어서 타국의 이익과 상충지불 등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리를 정당하게 고려해야함(협약 제61조 제2항)

#### (3) 공해와 VTS(유엔해양법협약)

◦ 공해에서 VTS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광의의 선박통제행위 및 사고 후 구제를 위한 국가간 권조제관 의무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타국의 의무), 유엔해양법협약 제36조(원조제 관할권)

### III. VTS 적용범위의 확대 및 관련 국제법 규정진도(6)

9.5 IMO 해상안전과 VTS

(1) 1974년 SOLAS 협약

- SOLAS 협약 제5장 제19조에서 규정하듯이 VTS의 적용은 사건에 방적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영해 미만의 수역이라 할지라도 해상사고발생시 조난전문의 발송, 수색 및 구조 등에 대한 영해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사전예방적 차원의 조치에 부가하여 사고발생시 사후구제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간 광역 VTS 협력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 : SOLAS협약 제19조(조난전문의부의 절차), SOLAS협약 제15조(수색 및 구조)

(2)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SAR)

- 해상에서 조난자를 구조하고, 이를 위한 관련국가 및 국제기구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관련국 간의 지역적 협력을 촉진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IV. 광역 VTS 운영의 필요성 및 국제법적 대응방안

4.1 광역 VTS의 개념

- 관제범위 측면 : 집단 VTS 장비 및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VTMS 도입을 통해 관제해역을 연안해역으로 확대하여 인근 VTS는 물론 주변 연안구간 정보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광역 VTS체제 구축.
- 기능적 측면 : 과거 VTS는 정보제공서비스 측면의 소극적 관제에서 사고방지 및 사후구제측면의 적극적 관제로 발전 - 통신기술 및 통신네트워크의 발달로 선박교통정보, 해양기상정보, 항로표지정보, 사고정보, 보안정보 등을 인근 VTS, 주변국가 VTS 및 관련 국제기구는 물론 해운회사, 해양경찰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종합안전정보센터로 발전.

### IV. 광역 VTS 운영의 필요성 및 국제법적 대응방안(2)

4.2 광역 VTS 운영의 필요성

- 한·중간 선박교통량의 증가 및 불안한 해상교통여건으로 대형 해난사고 재연 가능성
- 2007년 5월 12일 서해해역에서 공해로 조난가 침몰하는 사고 발생하여 인접국가간 해상교통안전 대책방안 마련 필요성
- 2007. 5. 14 - 5. 16 제8차 한·중 해상안전협력위원회 개최되었고, 인접국가간 해상교통안전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간 해상교통관제(VTS) 공동 협력 필요성을 합의하였음.
- 한·중 양국과 표창간 도해협 부근에 인접 인접국가간 정보공유 협력을 강화하는 광역 VTMS 체제를 수립하였고, 관련 국제기구에서 VTS 서비스 영역 확대 및 e-Nav의 공동포괄을 논의한 바 있음(IALA 24차 VTS 회의/2008. 9.)
-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해역에서도 주변국가간 견지협력지원 광역VTS망 구축을 위한 양국·인접VTS센터간의 정보연계 및 공유체계 확립이 시급함.
- 이에 따라, 인접국가간 해양사고 방지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내 광역VTS망 운영에 한·중, 한·일·중 양국 해상교통관리체계(VTS)실시를 위한 주변국가간 지역적 협력이 실질적 필요성 인정됨.

### IV. 광역 VTS 운영의 필요성 및 국제법적 대응방안(3)

4.4 국제법적 대응방안

(1) 연안국 관할권의 확대

- 관할수역의 확대
  - 접속수역, 배타적 적출수역, 공해
- 관할권 행사내용의 확대
  - 사전적 예방(안전, 해양환경)
  - 사후적 구제(안전, 해양환경, 보안 등)
- VTS의 국제화 및 관제요원의 국제성 확립
  - 주변국가 관제요원과의 교환근무
  - 관련국가 VTS 요원의 공동교육 실시

### IV. 광역 VTS 운영의 필요성 및 국제법적 대응방안(4)

(2) 지역적 협력

- UNCLOS 및 기타 국제협약에 근거한 지역협정 또는 MOU의 체결
  - 지역적 협력의 필요성
  - 지역적 협약체택의 필요성
  - 지역적 협약체택의 방법론
- 지역협정상에 국가의 권리와 의무 구체화
  - 예방의 의무(duty to prevent)
  - 사전통고의 의무(duty to inform)
  - 상호협력의 의무(duty to cooperate)
  - 원조의 의무(duty to assist)

### IV. 광역 VTS 운영의 필요성 및 국제법적 대응방안(5)

(2) 지역적 협력

- 광역 VTS 실행을 위한 메카니즘의 설립
  - 집행기구(Commission)의 설치
  - 집행기구의 기능, 성격, 의사결정절차 등
- 국가의 의무 이행 및 의무위반에 대한 국가책임
  -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가해자 비용부담의 원칙(injurer pays principle)
  - 비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확립
  - 평화적 해결의 원칙
  - 정치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